

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(C2자금) 운용기준 개정 내용

2020.10.27.

한국은행 인천본부 업무팀

I 개정 배경

- 최근 전략지원부문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
 - 중소기업 지원제도 변경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전략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 관련 기준을 개정
- 운용기준 조문의 명료화 및 간소화를 통해 지원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자금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

II 주요 내용

1. C2자금 지원대상 기준 일부 변경

- 전략지원부문의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 중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세부 요건과 인천광역시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의 선정 요건을 삭제 (운용기준 내 <별표1>)
 -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원요건 변경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세부 요건 유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
- 일반지원부문의 추천기업(A6) 중 인천광역시 선정 향토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(운용기준 내 <별표1>)
 - 2015년 이후 신규선정이 중단되고 선정기업의 지정 기간도 2017.12월 부로 모두 만료

2. 운용기준 조문 정비

□ 운용기준 내 일부 조항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, 추가

○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조문(현행 제3조)을 지원대상 조문(현행 제4조) 뒤로 배치하고 지원자금 부문별 운용규모 설정 근거 명시(개정안 제4조)

— 특별지원부문 운용규모 결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항 신설(제2항)

— 서로 다른 조항에서 서술되었던 전략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 한도 결정 관련 내용(현행 제5조 제6항, 제7조 제2항)을 단일 조항에 포함(각각 개정안 제4조 제3항, 제4항)

○ 지원자금 조항의 순서를 변경(전략, 특별, 일반 → 특별, 전략, 일반 順)하고 지원 자금 배정 관련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간소화

— 특별지원부문(개정안 제5조) 배정시 금융기관 대출취급 계획 제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 등 중복 문구를 삭제

— 전략지원부문(개정안 제6조)과 일반지원부문(개정안 제7조)의 운용규모 결정 관련 내용 및 업체당 지원한도 관련 중복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보다 명료하게 표현

□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규·기관명 및 산업분류 내용 등 변경사항을 반영

○ 혁신기업 중 INNO-BIZ, MAIN-BIZ 주관부서 명칭 변경
(중소벤처기업청 → 중소기업부)

○ 녹색기업 중 GR마크 인증 주관부서 명칭 변경
(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→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)

○ 소재·부품 생산기업의 확인서 발급기관 변경
(산업통상자원부 →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

- 소재·부품 생산기업의 근거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제4조 및 <별표 1>에 “장비” 문구 추가

- * 소재·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→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-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(2017.7.1일 시행)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<별표 2>에서 주점업 세분류 56213 생맥주전문점 추가

□ 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 (제10조)

- 현행 운용기준 <별표 3> 위규사유 중 하나인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운용기준 본문 제10조에 명시적으로 반영

□ 기타 자구 수정 및 표 이동 등

- <별표 1>에서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(A16) 중 음식·숙박업 및 여가업의 단서조항(<별표 2>와 중복) 삭제

- <별표 3>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를 제13조 내에 포함

- 기타 조문의 명료화 및 간소화

Ⅲ 시행일자

□ 시행일자 : 2020년 11월 1일(2021.1월 한도배정)

-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은 종전 기준을 적용